# 서울특별시립체육시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(대안)

의 안 번 호 1667 제안년월일 : 2024년 3월 4일

제 안 자 : 문화체육관광위원장

#### 1. 대안의 제안경위

○ 2024년 2월 2일 이종환 의원이 발의한 「서울특별시립체육시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」(의안번호: 제1538호)과 같은 날 이민석 의원이 발의한 「서울특별시립체육시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」(의안번호: 제1555호)과 2024년 2월 5일 김길영 의원이 발의한 「서울특별시립체육시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」(의안번호: 제1613호) 이상 3건의 안건을 심사한 결과, 각각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하고, 각 개정 조례안의 내용을 통합·조정하여 위원회의 대안으로 제안하기로 함.

### 2. 대안의 제안이유

○ 시장으로 하여금 매크로 프로그램을 이용한 체육시설 예약 및 입장권등의 부정판매를 방지하도록 하여 공정한 공공서비스 사용을 유도하고자 함.

- 시립체육시설에서 개최되는 체육경기에서 관람권을 발행할 경우 관람권 수입액의 10%를 관람권사용료로 징수하였던 것을 공공· 문화예술행사와 동일한 수준인 8%로 하향하여 체육시설에서의 본래 사용목적인 체육행사 개최를 장려하고자 함.
- 기업으로부터 일정 사용료를 받고 시립체육시설의 명칭을 변경할 수 있도록 하는 명칭사용권의 활용 근거 규정을 마련하여 시 세수를 확대하고자 함.

#### 3. 대안의 주요내용

- 가. 시장이 체육시설의 부정예약 및 이용권등의 부정판매를 방지할 수 있도록 근거 조항을 신설함(안 제4조의3).
- 나. 시립체육시설에서 개최되는 체육경기의 관람권사용료를 조정함 (안 제8조제2항제1호).
- 다. 시립체육시설을 운영함에 있어 명칭사용권을 활용할 수 있도록 근거 조항을 신설함(안 제15조의2).

# 서울특별시립체육시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서울특별시립체육시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1장에 제4조의3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- 제4조의3(체육시설 이용권등의 부정판매 금지 등) ① 시장은 체육시설 이용 권등의 부정판매를 방지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.
- ② 시장은 정보통신망에 지정된 명령을 자동으로 반복·입력하는 프로그램을 이용한 체육시설 예약을 방지하고 예방하기 위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. 제8조제2항제1호를 삭제하고, 같은 항 제2호 및 제3호를 각각 제1호 및 제2호로 하며, 같은 항 제1호(종전의 제2호) 중 "공공행사"를 "체육경기, 공공행사"로 한다.

제2장에 제15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- 제15조의2(명칭사용권) ① 시장은 기업이 사용료를 지불하고 체육시설의 명칭에 기업의 명칭이나 브랜드 등을 일정 기간 사용하도록 할 수 있다.
  - ② 제1항에 따른 사용료는 시장이 별도로 정한다.
  - ③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의 명칭사용을 허가하여서는 아니된다.
  - 1. 정치적 · 종교적 편향성을 띠어 공공성이 현저히 저해된다고 인정되는 경우
  - 2. 기타 공공질서와 선량한 미풍양속을 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

부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### 신・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<u>&lt;신 설&gt;</u>	제4조의3(체육시설 이용권등의 부정
	판매 금지 등) ① 시장은 체육
	시설 이용권등의 부정판매를 방지
	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.
	② 시장은 정보통신망에 지정된
	명령을 자동으로 반복・입력하는
	프로그램을 이용한 체육시설
	예약을 방지하고 예방하기 위한
	조치를 취할 수 있다.
제8조(관람권 수입에 따른 사용료)	제8조(관람권 수입에 따른 사용료)
① (생 략)	① (현행과 같음)
② 전용사용자는 제1항에 따라	②
발행하는 관람권 수입에 대하여는	
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금액을	
시장에게 관람권사용료로 납부	
하여야 한다. 이 경우 그 금액이	<u>.</u>
제9조의 입장료 수입 총액보다	
적을 경우에는 입장료 수입 총액에	
상당하는 금액을 납부하여야 한다.	
1. 체육경기 : 관람권 수입 총액의	<u>&lt;삭 제&gt;</u>
<u>100분의 10</u>	
<u>2</u> . <u>공공행사</u> , 문화예술행사 :	<u>1</u> . <u>체육경기, 공공행사</u>
관람권 수입 총액의 100분의 8	
<u>3</u> . (생 략)	<u>2</u> . (현행 제3호와 같음)
③・④ (생 략)	③・④ (현행과 같음)

#### <신 설>

- 제15조의2(명칭사용권) ① 시장은 기업이 사용료를 지불하고 체육 시설의 명칭에 기업의 명칭이나 브랜드 등을 일정 기간 사용 하도록 할 수 있다.
  - ② 제1항에 따른 사용료는 시장이 별도로 정한다.
  - ③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 항의 명칭사용을 허가하여서는 아니된다.
  - 1. 정치적·종교적 편향성을 띠어 공공성이 현저히 저해된다고 인정되는 경우
  - 2. 기타 공공질서와 선량한 미풍양속을 해할 우려가 있다고인정되는 경우